<bof>

1. [%1](#1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3 Special taxations for promoting investment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n]
   1. [1] (#1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요)(#2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요)(#3 Overview of special taxations for promoting investment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n]
      1. {1}(#1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차기 환류적립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18.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2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로 갖고 있는 소득을 미환류소득이라 합니다. 이러한 미환류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환류 적립금으로 이월된 금액과 초과환류액(미환류금액이 마이너스일 때)을 공제한 금액에 20%를 곱하여 산출한 세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3 In the case of a domestic corporation, income held in the form of cash or deposits, which is not used for investments, wages, etc., is referred to as "unappropriated income". When there is unappropriated income, a tax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20% by the amount obtained after deducting the carried-over amount to the next year and any over-appropriated amount (when unappropriated income is negative). This tax is then added to the corporate income tax payable by applying the tax rate to the taxable income for each business year.){r2<n>}
   2. [2](#1 과세대상 법인)(#2 과세대상 법인)(#3 Taxable corporations)[T,e1<n>]
      1. {1}(#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입니다.)(#3 =Corporations with equity exceeding KRW 500 billion as of the end of each fiscal year are subject to this provision.){n}
      2. {2}(#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비영리법인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2 =중소기업･비영리법인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됩니다.)(#3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non-profit corporations, and corporations falling under any of the items listed in Article 51-2(1) of the Corporate Tax Act are excluded.){n}
      3. {3}(#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대상입니다.)(#3 =Corporations belonging to a business group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under Article 31(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s of the end of each fiscal year are subject to this provision.){n}
   3. [3](#1 신고방법과 과세방식)(#2 신고방법과 과세방식)(#3 Filing method and taxation method)[n]
      1. [4] (#1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신고방법)(#2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신고방법)(#3 Filing method for special taxations for promoting investment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n]
         1. {1}(#1 내국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양수인 경우 “미환류 소득”, 음수인 경우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함)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2 내국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양수인 경우 “미환류 소득”, 음수인 경우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함)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3 A domestic corporation must file the calculated amount (referred to as "unappropriated income" for positive amounts and "over-appropriated amount" for negative amounts) using one of the following methods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end of the month in which the fiscal year end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r1<n>}
      2. [5] (#1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과세방식)(#2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과세방식)(#3 Taxation method for special taxations for promoting investment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n]
         1. {1}(#1 투자금액포함 방식, 투자금액제외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하되, 투자금액포함방식은 3년간 계속 적용하고 투자금액제외방식은 1년간 계속 적용. 단,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조특칙 §45의9⑪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 가능)(#2 투자금액포함 방식, 투자금액제외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하되, 투자금액포함방식은 3년간 계속 적용하고 투자금액제외방식은 1년간 계속 적용합니다. 단,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법에서 정하는 일정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3 You can choose between the investment amount inclusion method and the investment amount exclusion method, with the investment amount inclusion method applying continuously for 3 years and the investment amount exclusion method applying continuously for 1 year. However, in certain cases specified by law, such as when a corporation subject to corporate tax on unappropriated income undergoes a merger or acquires a business, the chosen method can be changed.){r1<n>,r5x1<n>,r5x2<n>}
      3. [5x1] (#1 투자금액포함방식)(#2 투자금액포함방식)(#3 Investment amount inclusion method)[n]
         1. {1}(#1 [기업소득×70%－(투자금액＋임금증가금액＋상생협력지출금액)] ×20%)(#2 [기업소득×70%－(투자금액＋임금증가금액＋상생협력지출금액)] ×20%)(#3 [(Corporate income × 70%) - (investment amount + wage increase amount +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expenses)] × 20%){ r1<n>,r5<n>,r5x2<n>}
      4. [5x2](#1 투자금액제외방식)(#2 투자금액 제외방식)(#3 Investment amount exclusion method)[n]
         1. {1}(#1 [기업소득×15%－(임금증가금액＋상생협력지출금액)]×20%)(#2 [기업소득×15%－(임금증가금액＋상생협력지출금액)]×20%)(#3 [(Corporate income × 15%) - (wage increase amount +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expenses)] × 20%){ r1<n>,r5<n>,r5x1<n>}
      5. [7](#1 무신고시 산정방법)(#2 무신고시 산정방법)(#3 Calculation method when not filed)[n]
         1. {1}(#1 최초 미환류소득에 대한 적용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이 적거나 초과환류액이 많게 산정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2 최초 미환류소득에 대한 적용대상이 된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이 적거나 초과환류액이 많게 산정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3 It is assumed that you have selected a filing method during the first fiscal year in which you become subject to the provision, whether the unappropriated income is low or the over-appropriated amount is high.){r4<n>}
      6. [8](#1 초과환류액 이월)(#2 초과환류액 이월)(#3 Carryforward of over-appropriated amount)[n]
         1. {1}(#1 해당 사업연도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동안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2 해당 사업연도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동안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3 If there is an over-appropriated amount in a given fiscal year, it can be carried forward to the next two fiscal years and deducted from unappropriated income during those two fiscal years.){r1<n>,r5<n>}
      7. [9](#1 차기환류적립금 공제)(#2 차기환류적립금 공제)(#3 Deduction of next-year appropriation reserve)[n]
         1. {1}(#1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당해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이 직전 2개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 상당액 보다 적은 경우는 법인세액((차기환류적립금 -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2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당해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이 직전 2개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 보다 적은 경우는 법인세액((차기환류적립금 - 초과환류액) × 20%)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3 Domestic corporations can reserve all or part of the unappropriated income for the relevant fiscal year as a next-year appropriation reserve, which can be deducted from the unappropriated income for that fiscal year. However, if the over-appropriated amount for the current fiscal year is less than the next-year appropriation reserve reserved in the previous two fiscal years, the corporation must pay an additional corporate tax amount ((next-year appropriation reserve - over-appropriated amount) × 20%).){ r1<n>}
      8. [10](#1 투자금액공제분 사후관리)(#2 투자금액공제분 사후관리)(#3 Post-management of deducted amount for investment)[n]
         1. {1}(#1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투자금액으로 공제받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에는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0의32󰊊󰊓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2 내국법인이 투자금액으로 공제받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에는 그 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않았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기간에 걸친 이자상당액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3 When a domestic corporation disposes of business assets, such as machinery and equipment, for which it previously received an investment deduction, the corporation must pay additional corporate tax on the previously untaxed unappropriated income and the proportional interest amount over a period.){r1<n>}
      9. [11](#1 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2 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3 The transfer of unappropriated income and over-appropriated amount for merged corporations, etc)[n]
         1. {1}(#1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45의9󰊉󰊖에 따라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2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합병되는 법인 또는 분할되는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한 법인 또는 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은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3 In the event of a merger or division resulting in the disappearance of the merging or splitting corporation, the merged corporation or newly established corporation may inherit the unappropriated income and over-appropriated amount.){r1<n>}
   4. [12](#1 $(계산흐름도))(#2 $(계산흐름도))(#3 $(Calculation flowchart))[n]

{1}텍스트, 번호, 스크린샷, 영수증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n}

* 1. [13](#1 과세대상 소득)(#2 과세대상 소득)(#3 Taxable income)[n]
     1. [14](#1 ==가산항목)(#2 ==가산항목)(#3 ==Additional items)[n]
        1. [15](#1 국세 등 환급금 이자)(#2 국세 등 환급금 이자)(#3 Interest on refund of national taxes, etc)[n]
           1. {1}(#1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대상인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2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무조정 대상인 국세 또는 지방세의 잘못 납입한 금액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3 Interest on overpaid amounts of national and local taxes that are not recognized as income){r1<n>,r3<n>}
        2. [16](#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2 수입배당금 중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3 Amounts not recognized as income from dividends received)[n]
           1. {1}(#1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 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2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이익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3 Amounts not included as profit from dividends received by a domestic corporation from another domestic corporation in which it has invested){r1<n>,r3<n>}
        3. [17](#1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2 이월되는 기부금의 비용 인정액)(#3 Recognized expenses of carried-over donations)[n]
           1. {1}(#1 10%･50% 한도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중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금액)(#2 10%･50% 한도 기부금 중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을 초과하여 이월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금을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3 The amount recognized as an expense in the fiscal year for the excess amount due to a carry-over of the amount in excess of the deductible portion from the 10% and 50% limit donations recognized as expenses.){ r1<n>,r3<n>}
        4. [18](#1 투자자산 감가상각분(투자포함 방식))(#2 투자자산 감가상각분(투자포함 방식))(#3 Depreciation of investment assets (investment amount inclusion method))[n]
           1. {1}(#1 투자포함 방식을 적용받은 기계 및 장치 등 조특령§100의32⑥에서 정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2 투자포함 방식을 적용받은 기계 및 장치 등 법에서 정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3 Amount recognized as expenses in the current fiscal year for depreciation on assets specified by law that were subject to the investment amount inclusion method){ r1<n>,r3<n>}
     2. [19](#1 ==차감항목)(#2 ==차감항목)(#3 ==Deductible items)[n]
        1. [20](#1 법인세액등)(#2 법인세등)(#3 Corporate tax, etc)[n]
           1. {1}(#1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법§57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법법§15②(2)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2 해당 사업연에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하였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소득세)(#3 The special rural tax and local income tax on corporate income tax, including foreign corporate income tax that was paid directly by a domestic corporation in the relevant fiscal year but was not recognized as an expense, as well as corporate income tax deductions and exemptions.){r1<n>,r3<n>}
        2. [21](#1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2 상법상 기업에 적립이 강제되는 준비금 적립액)(#3 Reserve accrual amount mandated to corporations under the Commercial Act)[n]
           1. {1}(#1 상법§458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2 상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3 The reserve for earned surplus that is mandatory to serve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ct for the respective fiscal year.){ r1<n>,r3<n>}
        3. [22](#1 법령상 의무적립금(조특령§100의32④(2)다))(#2 법령상 의무적립금)(#3 Statutory mandatory reserve)[T, r1<n>,r3<n>]
           1. [22x1] (#1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3 Reserve manda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n]

{1}(#1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조특칙§45의9②)에 해당하는 금액(단,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3 Reserve manda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within a specified limit, among the following.){n}

* + - * 1. [22x2] (#1 조특칙§45의9②에 해당하는 금액)(#2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45조 9②에 해당하는 금액)(#3 Amount corresponding to Article 45(9)(2)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n]

{1}(#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조특령§100의32④(2)나 (상법상 이익준비금)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2 =법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단, 상법상 이익준비금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3 =Earned surplus reserve for the fiscal year according to the law (excluding amounts reserved as earned surplus reserve under the Commercial Act)){n}

{2}(#1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3 =Reserve amount mandated to financial companies or cooperatives for bad debt allowances or bad debt reserves, etc., for the fiscal year.){n}

{3}(#1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 보전 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2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액)(#3 =Reserve amount mandated to corporations engaged in insurance business according to the law.){n}

{4}(#1 =지방공기업법§67①(3)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의무적으로 사채 상환을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금액)(#3 =Reserve amount mandated to local public corporations according to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for the purpose of repaying bonds.){n}

{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신탁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2 =부동산신탁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3 =Reserve amount mandated to corporations engaged in real estate trust business for the fiscal year as trust business reserve.){n}

* + - 1. [24](#1 이월결손금 공제액)(#2 이월결손금 공제액)(#3 Deduction amount of losses carried forward)[n]
         1. {1}(#1 법법§13①(1)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한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과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공제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2 법인세법 제13조①(1)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 단,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한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2항과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공제 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3 Losses that can be deducted for the fiscal year according to Article 13(1)(1) of the Corporate Tax Act. However, the limit in the proviso of the same paragraph 1 shall not apply, and in the case of a merged corporation, the deduction restriction provisions under Article 45(1) and (2) and Article 46-4(1) of the Corporate Tax Act do not apply.){ r1<n>,r3<n>}
      2. [25](#1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2 합병되는 법인(분할되는 법인)의 양도차익, 주주인 법인의 배당간주소득)(#3 Gain on transfer of merged corporation (dividing corporation), dividend income of shareholder corporation)[T, r1<n>,r3<n>]
         1. {1}(#1 =법법§44①과 §46①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2 =법인세법 제44조①과 제46조①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으로 산입한 금액)(#3 =Transfer gain (loss) under Article 44(1) and Article 46(1) of the Corporate Tax Act, which was included as profit for the fiscal year.){n}
         2. {2}(#1 =법법§16①(5),(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 (법법§18의2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2 =법인세법 제16조①(5),(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에 산입한 금액. 단, 법인세법 제18조 2에 따른 이익으로 산입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입니다.)(#3 =Amount corresponding to Article 16(1)(5) and (6) of the Corporate Tax Act, included as profit for the fiscal year. However, it is the amount before applying the provisions that do not include as profit under Article 18(2) of the Corporate Tax Act.){n}
      3. [26](#1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2 기부금 비용한도 초과액)(#3 Excess amount beyond the donation expense limit)[n]
         1. {1}(#1 10%･50% 한도 기부금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법법§24②))(#2 10%･50% 한도 기부금의 기부금 비용 인정 한도를 넘어 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3 Amount not recognized as an expense for exceeding the limit of 10% and 50% for donation expenses.){ r1<n>,r3<n>}
      4. [27](#1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배당한 금액)(#2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배당한 금액)(#3 Amount received as dividends by liquidation specialists, etc)[n]
         1. {1}(#1 법법§51의2①에 따라 배당한 금액)(#2 법인세법 제51조 2①에 따라 배당한 금액)(#3 Amount distribu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2(1) of the Corporate Tax Act){ r1<n>,r3<n>}
      5. [28](#1 해외자회사 배당수익)(#2 해외자회사 배당수익)(#3 Overseas subsidiary dividend income)[n]
         1. {1}(#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 등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등 조특칙§45의9 ③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주식 등을 발행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금액)(#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외의 다른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5조의 9 ③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주식 등을 발행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금액)(#3 In the case of a domestic corporation that meets the criteria of Article 45-9(3)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Enforcement Rules, such as not holding shares other than those issued by a foreign corporation, the amount of dividend income received from the foreign corporation that issued shares, etc.){ r1<n>,r3<n>}
      6. [29](#1 공적자금 상환액)(#2 공적자금 상환액)(#3 Public fund repayment amount)[n]
         1. {1}(#1 공적자금관리 특별법§2(1)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2 법에서 정한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3 Amount spent in connection with the repayment of public funds as prescribed by law){ r1<n>,r3<n>}
  1. [30](#1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투자금액)(#2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투자금액)(#3 Special taxations investment amount for promoting investment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n]
     1. [31] (#1 과세특례 투자금액)(#2 과세특례 투자금액)(#3 Special taxations investment amount)[n]
        1. {1}(#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의미함(조특령§100의32⑥))(#2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새로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단, 사업용 자산에는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되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 법인의 경우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한정합니다.)(#3 The total investment amount for business assets newly acquired for use in domestic branches. However, lease assets other than finance leases are excluded, and for domestic corporations eligible for corporate special taxation for shipping companies, it is limited to assets specified by a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decree.){r32<n>,r33<n>,r34<n>,r35<n>}
     2. [32](#1 기계 및 장치 등)(#2 기계 및 장치 등)(#3 Machinery and equipment, etc)[n]
        1. {1}(#1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자산)(#2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자산)(#3 Machinery and equipment, tools, apparatus and supplies, vehicles and transport equipment, ships and aircraft, and other similar business assets.){ r31<n>,r33<n>,r34<n>,r35<n>}
     3. [33](#1 업무용 건물 건축비)(#2 업무용 건물 건축비)(#3 Construction cost of business buildings)[n]
        1. {1}(#1 공장, 영업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단,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조특칙§45의9⑥))(#2 공장, 영업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단,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3 Business buildings newly constructed or expanded for the corporation's business use, such as factories, business premises, offices, etc. However, it excludes buildings leased or not effectively used.){ r31<n>,r32<n>,r34<n>,r35<n>}
     4. [34](#1 무형자산 투자)(#2 무형자산 투자)(#3 Intangible asset investments)[n]
        1. {1}(#1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됨에 유의)(#2 영업권은 제외됩니다.)(#3 This excludes goodwill.){ r31<n>,r32<n>,r33<n>,r35<n>}
     5. [35](#1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2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3 New investment in venture companies)[T, r31<n>,r32<n>,r33<n>,r34<n>]
        1. {1}(#1 =벤처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벤처기업 설립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2 =벤처 기업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벤처기업 설립 후 유상으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3 =The shares acquired by investing capital as the initial capital contribution at the time of establishing a venture company, and by subscribing to and purchasing additional capital through the payment of subscription price in cases of a paid-in capital increase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venture company.){n}
        2. {2}(#1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도 포함(’19.2.12.이후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도 포함합니다.)(#3 =Indirect investments through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tart-up investment associations, etc., are also included.){n}
  2. [36](#1 임금증가 금액)(#2 임금증가 금액)(#3 Wage increase amount)[n]
     1. [37](#1 임금증가금액)(#2 임금증가금액)(#3 Wage increase amount)[n]
        1. {1}(#1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또는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1.5＋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2) + 청년정규직 근로자 임금증가액 +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액)(#2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또는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1.5＋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2) + 청년정규직 근로자 임금증가액 +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액)(#3 Regular full-time employee wage increase amount or (regular full-time employee wage increase amount × 1.5 + new full-time employee wage increase amount × 2) + young regular employee wage increase amount + converted regular employee wage increase amount.){r38<n>,r39<n>,r40<n>}
     2. [38](#1 상시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한 경우)(#2 상시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한 경우)(#3 When the wages of regular full-time employees increase)[T, r37<n>,r39<n>,r40<n>]
        1. {1}(#1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2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3 =If the number of regular full-time employees does not in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 Wage increase amount){n}
        2. {2}(#1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1.5＋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2)(#2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1.5＋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2)(#3 =If the number of regular full-time employees increase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 Wage increase amount for existing regular full-time employees × 1.5 + wage increase amount for new regular full-time employees × 2){n}
     3. [39](#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2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3 If there i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young regular employees)[n]
        1. {1}(#1 청년정규직 근로자 임금증가액)(#2 청년정규직 근로자 임금증가액)(#3 Wage increase amount for young regular employees){ r37<n>,r38<n>,r40<n>}
     4. [40](#1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액)(#2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액)(#3 If there are regular employees who are converted from non-regular positions: Wage increase amount for converted regular employees)[T, r37<n>,r38<n>,r39<n>]
        1. [40x1](#1 상시근로자)(#2 상시근로자)(#3 Regular full-time employees)[n]
           1. {1}(#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조특령§26의4②(1) 및 (3)~(6)에 해당하는 자,소득세법§20①(1) 및 (2)에 따른 근로소득(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총급여를 연 단위로 환산하여 판단 )의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 4②(1) 및 (3)~(6)에 해당하는 자. 단, 소득세법 제20조①(1) 및 (2)에 따른 근로소득의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만약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총급여를 연 단위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3 Individuals who have entered into a labor contract according to the Labor Standards Act and fall under Article 26-4(2)(1) and (3)~(6)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Enforcement Decree. However, individuals with labor income of over KRW 80 million according to Article 20(1)(1) and (2) of the Income Tax Act are excluded. If the employment period is less than one year, the total salary is calculated on an annual basis for assessment.){ n}
        2. [40x2](#1 임금증가액)(#2 임금증가액)(#3 Wage increase amount)[n]
           1. {1}(#1 소득세법§20①(1) 및 (2)에 따른 근로소득 (법령§19(16)에 따라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을 포함,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은 제외하되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2 근로소득의 합계가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 단, 법인이 비용으로 인식한 우리사주조합을 포함한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은 제외합니다.)(#3 The amount by which the total labor income increases compared to the previous fiscal year. However, treasury shares provided to regular full-time employees, including employee's stock ownership association recognized as expenses by corporations, are excluded.){ n}
        3. [40x3](#1 상시근로자 수)(#2 상시근로자 수)(#3 Number of regular full-time employees)[n]
           1. {1}(#1 조특령§26의4③ 준용)(#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 4③을 준용합니다.)(#3 The provisions of Article 26-4(3)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Enforcement Decree shall apply.){n}
        4. [40x4] (#1 청년 상시근로자)(#2 청년 상시근로자)(#3 Young regular employees)[n]
           1. {1}(#1 조특령§26의5③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 5③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입니다.)(#3 Young regular employees as defined in Article 26-5(3)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Enforcement Decree.){n}
        5. [40x5](#1 정규직 전환 근로자)(#2 정규직 전환 근로자)(#3 Converted regular employees)[n]
           1. {1}(#1 조특령§26의4⑬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4⑬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입니다.)(#3 Converted regular employees as defined in Article 26-4(13) of the Special Taxation Limitation Act Enforcement Decree.){n}
  3. [43](#1 상생협력 지출금액)(#2 상생협력 지출금액)(#3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expenditure)[n]
     1. {1}(#1 상생협력출연금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3)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으로 사업연도에 지출한 조특령§100의32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법령§2⑤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제외))(#2 상생협력출연금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 사업연도에 지출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32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입니다.)(#3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contribution, etc.: Contributions made for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unde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hich correspond to any of the items in Article 100-32(14) of the Special Taxation Limitation Act Enforcement Decree.){r1<n>,r2<n>}
  4. [45](#1 ==예규)(#2 ==예규)(#3 ==Established rules)[n]
     1. [46](#1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2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3 Whether it is possible to inherit the carried forward next-year appropriation reserve)[n]
        1. {1}(#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 2022.8.23.))(#2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된 법인이 2019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합병한 법인이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3 In the case where a domestic corporation merged with another domestic corporation in 2020, the merged corporation can inherit the carried forward next-year appropriation reserve if the merged corporation reserved the carried forward next-year appropriation reserve in 2019.){r51<n>}
     2. [47](#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 적용 방법)(#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 적용 방법)(#3 Method of applying the investment amount inclusion method when declaring corporate tax for unappropriated income)[n]
        1. {1}(#1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2022.8.22.))(#2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3 If a domestic corporation chooses the investment amount inclusion method, it must apply it for three years. However, if it continues to choose and apply the investment amount inclusion method until the business year ending on the date that becomes the fourth or fifth year, it can select and apply the investment amount exclusion method in the following business year.){r48<n>}
     3. [48](#1 임대용자산 취득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 임대용자산 취득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3 Whether the acquisition of rental assets qualifies as "investment" if the corporate income appropriation tax system applies)[n]
        1. {1}(#1 지게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용 지게차 (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를 새로이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1- 법인-8109, 2022.3.29.))(#2 지게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용 지게차를 새로이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에는 투자에 해당합니다. 단, 지게차 취득의 범위에 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됩니다.)(#3 When a domestic corporation engaged in forklift rental business acquires a new forklift for use in its domestic business premises and then rents it out, it is considered an investment. However, lease assets other than used items and financial lease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forklift acquisition.){r47<n>}
     4. [49](#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해당 여부)(#3 Whether there is an additional corporate tax for unappropriated income)[n]
        1. {1}(#1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1-법인-6992, 2021.11.10.))(#2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When a domestic corporation engaged in facility leasing activities acquires leaseable assets and provides them to a lessee in the form of operating lease, it does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transferring or leasing the asset within 2 years from the investment completion date", and therefore, it does not constitute a reason for additional corporate tax payment.){r50<n>}
     5. [50](#1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투자금액의 귀속시기)(#2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투자금액의 귀속시기)(#3 The timing of accrual for the investment amount deducted when calculating unappropriated income)[n]
        1. {1}(#1 투자가 1개 사업연도 내에 완료되는 경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결제하더라도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투자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3, 2021.9.30.))(#2 투자가 1개 사업연도 내에 완료되는 경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결제하더라도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투자 합계액을 공제합니다.)(#3 If an investment is completed within one business year and the remaining balance is paid by promissory note in the next business year, the total investment amount is deducted when calculating unappropriated income for the business year in which the investment date falls.){r49<n>}
     6. [51](#1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한 법인이 합병된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3 The meaning of the carried forward loss amount inherited when calculating unappropriated income)[n]
        1. {1}(#1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8.19.))(#2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합병된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합병된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입니다.)(#3 The carried forward loss amount inherited from the merged corporation, deducted when calculating unrepatriated income, is a loss incurred within 10 years prior to the start of the relevant fiscal year of the merged corporation and remains undeducted in the calculation of taxable income for subsequent fiscal years.){r46<n>,r53<n>}
     7. [52](#1 미환류소득 계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2 미환류소득 계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3 Whether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method of calculating unappropriated income)[n]
        1. {1}(#1 내국법인이 2016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2017~2018사업연도까지 적용하였더라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2016사업연도는 투자제외방법을, 2017~2019사업연도는 투자포함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서면-2020- 법령해석법인-1247, 2021.2.4.))(#2 내국법인이 2016년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2017~2018년도까지 적용하였더라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2016년도는 투자제외방법을, 2017~2019년도는 투자포함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3 Even if a domestic corporation selected and applied the investment amount inclusion method when declaring corporate tax for unappropriated income in 2016 and applied it until 2017-2018, it can choose to apply the investment amount exclusion method for 2016 through a revised declaration and reassessment claim, while applying the investment amount inclusion method for 2017-2019.){r54<n>}
     8. [53](#1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의미)(#2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의미)(#3 The meaning of the carried forward loss amount deducted from corporate income when calculating unappropriated income)[n]
        1. {1}(#1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라목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59, 2020.12.7.))(#2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합니다.)(#3 The carried forward loss amount deducted from the income of each fiscal year when calculating a corporation's unrepatriated income refers to losses incurred within the 10 years prior to the start of each fiscal year in accordance with the Corporate Tax Act, which have not been deducted when calculating the taxable income of subsequent fiscal years.){r51<n>}
     9. [54] (#1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2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액 산정방법)(#3 The calculation method for the wage increase amount of regular full-time employees deducted from unappropriated income)[n]
        1. {1}(#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2022.08.31.))(#2 내국법인이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합니다.)(#3 When a domestic corporation calculates the "wage increase amount of regular full-time employees for the relevant business year", retired employees from the previous business year are excluded from the total wage amount for the previous business year.){r52<n>}

<boe>